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조사원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9급 2명),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2명),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1호 중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정책 종합·조정”으로 한다.

제13장(제53조의3)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28일”을 “2025년 12월 28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⑯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별표 1의 지방해양수산청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99”를 “5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95”를 “5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8”을 “57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947”을 “2,928”로 하고, 일반직 계 “2,836”을 “2,8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13”을 “2,794”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2023년 12월 28일”을 “2025년 12월 28일”로 한다.

별표 5 제2호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5조제1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4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5조제8항·제16항 및 별표 5 제5호·제13호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9일
2. 별표 1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의 개정
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
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9

명(5급 1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해양정책실) ①·② (생략)	제10조(해양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0. (생략)	1. ~ 40. (현행과 같음)
41. <u>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u>	41. <u>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정책 종합·조정</u> ----
42. ~ 87. (생략)	42. ~ 87. (현행과 같음)
<u>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u><삭 제></u>
제53조의3(평가대상 조직) ①	<u><삭 제></u>
「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 제31조제1항에 따라 <u>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u>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 제17조의3제1항제1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 ----- -----

호에 따라 <u>2023년 12월 31일</u> 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 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 <u>2025년 12월 31일</u> ---
② ~ ⑤ (생략)	----- -----.
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 단) ① 해양수산부에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3년 12월 28일</u> 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 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 단) ① ----- ----- ----- ----- <u>2025년 12월 28일</u>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한시정원) ① (생략)	제55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삭제	③ ----- ----- ----- ----- ----- <u>2025년 2월 28일</u> ----- ----- -----.
③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2월 29일</u> 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 부에 둔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⑤ ~ ⑦ 삭제	
⑧ <u>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 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u>	<u><삭제></u>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⑨ ~ ⑮ (생략)

<신설>

⑨ ~ ⑮ (현행과 같음)

⑯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9</u>	<u>593</u>	-6
•	•	•	
•	•	•	
일반직 계	<u>595</u>	<u>589</u>	-6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78</u>	<u>572</u>	-6
•	•	•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47</u>	<u>2,928</u>	-19
·	·	·	
·	·	·	
일반직 계	<u>2,836</u>	<u>2,817</u>	-1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813</u>	<u>2,794</u>	-19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